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81호
2020.11.9

정책동향

- 공정경제 및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혁신
- 재난·안전 공제 의무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동향

- 건설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

산업정보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설업 일자리

건설논단

- 경기회복을 위해선 SOC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공정경제 및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혁신

- 유의미한 성과 기대, 계약자 간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 추진은 신중해야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 방안 마련

-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함(<표 1> 참조)¹⁾.
 - 2019년 기준 약 13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계약제도가 민간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날로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조달시장 진입장벽, 불공정 계약관행, 경직·획일적인 계약절차 등 현행 공공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 해당 배경하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7개 부처(기재부, 공정위 등), 10개 공공기관(한전, LH 등), 7개 협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를 약 4개월간 운영·완료하였으며, 3대 혁신 목표(① 혁신·신사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② 공정계약 문화 정착, ③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45건의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표 1>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 기본방향

혁신목표	주요 내용	주요 추진과제
혁신·신사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신사업 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 입찰방식 개선 등 기술경쟁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혁신제품 사용결과에 대한 면책 확대 ② 혁신제품 등 실적평가 제외 ③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마련 ④ 협상계약 기술력·콘텐츠 평가 강화 ⑤ 기술제한입찰제도 정비·차별화
공정계약 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 ■ 계약상대자 권익 보호 ■ 조달기업 간 상생협력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등 전가 금지 ② 일방적인 근로자 교체요구권 완화 ③ 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 연장제도 개선 ④ 계약원가 산정기준 보완 ⑤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⑥ 계약분쟁조정제도 대상·금액 확대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직적 계약절차 개선 ■ 입찰·계약절차 간소화 ■ 조달기업 부담 완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카탈로그 계약’ 도입 ② 수의계약 허용기준 등 합리화 ③ 사업목적·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 강화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 ⑤ 조달기업의 보증 부담 완화 ⑥ 보험리스계약 등 적격심사 평가 간소화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0.10.27).

1) 관계부처 합동(2020),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 방안”.

- 정부는 ‘계약제도 혁신 TF’ 를 통해 도출한 45건의 추진과제 중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하거나 쟁점이 없는 17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시행령이나 계약예규,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TF 운영 기간 중 우선적으로 추진을 완료함.
 - 추진 완료 과제 중 건설산업과 밀접한 사항으로는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 계약상대자 권익 보호 강화 목적의 ‘계약원가 산정기준 보완’, ‘공사 기간 연장시 간접비 지급 회피 제한’, ‘입찰 공고시 공사 기간 산출근거 제시’가 있으며,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등 전가 금지’, ‘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 개선’ 등도 추진을 완료함.
 - 특히, 이미 완료한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을 위한 추진과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일부 발주기관에서 낙찰단가를 기초로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 공기 연장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이 공사를 중단하고 사유 종료 후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간접비를 회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함으로써 정적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수행이 완료된 17건의 과제 외에도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조달 기업 간 상생·협력기반 구축’, ‘경직적인 계약절차 개선’, ‘조달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향후 2021년 상반기까지 28건의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임.
 - 특히, 건설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를 살펴보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우선순위 개선’, ‘종합·전문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금액제한 폐지’,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기준 정비’, ‘수의계약 기준 등 합리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표 2>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과제 및 일정

주요 내용	과제명	주요 내용	개정사항 등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	종합심사낙찰제 (중심제) 동점자 우선순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중심제 가격평가는 제도 도입취지에 따라 저가입찰이 아닌 균형가격 (입찰자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가격)에 근접한 입찰자에게 가격 점수 부여, 다만 합산 점수상 동점자 발생시 입찰가격이 낮은 자가 균형가격 근접자보다 우선하여 낙찰 → 저가입찰 관행 지속 ■ (개선) 동점자 발생시 우선 낙찰순위를 저가낙찰자에서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하여 저가투찰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품질을 제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거쳐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예정 	계약예규 (2021.上)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계약분쟁조정 제도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비용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제도 확대 필요성 제기 ■ (개선) 금년 하반기 중 분쟁조정 대상 확대, 금액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대상 : 대가지급,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 등 • 최소금액 완화 : (종합) 30억원 → 10억원 이상, (전문) 3억원 → 1억원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1.上)
	부정당제재 리니언시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자진신고·조사협조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감면이 가능한 반면(리니언시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제재는 감면 불가 ■ (개선) 자진신고 등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는 경우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제재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1.上)
조달기업 간 상생협력기반 구축	종합·전문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추정가격 3~10억원 구간의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간 낙찰하한율, 경영상태 등 평가 기준 상이 ■ (개선)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3~10억원 구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및 그 외 평가항목배점 일원화 	계약예규 (2020.下)

	주계약자 공동도급 금액 제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중심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하여 적용 ■ (개선) 공사 규모 제한 없이 모든 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고 주계약자 등 공동도급 제도 보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역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 세부 이행방식기준 등 보완 	계약예규 (2020.下)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기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건설업역 개편에 따라 동일공사에서 종합전문 업체 간 경쟁시 상호 실적 인정 범위 등 평가기준 부재 ■ (개선) 시범사업 결과(9개 사업 진행 중)를 바탕으로 상호실적 인정 범위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예규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전문)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별로 분류, 해당 업종 실적의 2/3 인정 • (전문→종합) 전문업종 실적을 단순합산하거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여 전문업종별 평가 후 합산 	계약예규 (2021.上)
경직적인 계약절차 개선	수의계약 기준 등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15년 이상 동일한 수준의 대상-금액기준 등이 유지됨에 따라 제도 취지에 따른 신속효율적인 사업추진 곤란 ■ (개선) 그 간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1.上)
조달기업 부담 완화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공사계약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전체 업체의 4.49%) ■ (개선)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 만점 기준을 공사의 규모에 따라 기업신용평가 등급 B+, BB0 이상(전체 업체의 45.9%)으로 완화 	계약예규 (2020.下)
	입찰 가격평가 대상에서 품질관리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공사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의무적으로 계상(건설기술진흥법) ■ (개선) 품질관리비 의무계상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 금액을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금액에 전액 반영 보장 	계약예규 (2020.下)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10.27).

■ 공정경제 구축 기대되나, 계약자-계약자 등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과제 추진에는 신중해야

- 이번 계약제도 혁신 방안은 민·관 합동 TF의 추진 결과인 만큼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을 위한 기반 조성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향후 추진 예정인 과제 역시 적기 완료를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 다만, ‘조달기업 간 상생·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 등 발주자-계약자 간 관계가 아닌 계약자-계약자 간 관계 등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윈-윈(Win-Win)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에 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과제 추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경우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부계약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주계약자의 연대책임, 추가비용 부담 문제 등이 존재하는 한편,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준치 여부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과제 추진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이광표(부연구위원 · leekp@cerik.re.kr)

재난·안전 공제 의무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30개 재난 및 안전 관련 책임 의무보험 중 건설공사 대상은 전무 -

■ 공제(보험)²⁾란, 미래 사고에 대한 손실 회복비용을 같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제도

- 법률적 측면에서 공제는 가입자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손실을 일정한 대가를 미리 지불하고 제3자(공제 및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행위임.
- 공제는 크게 생명 및 손해공제로 구분되며 손해공제는 보상대상에 따라 일반공제와 책임공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손해공제의 일종인 책임공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일반 손해공제와는 차이가 있음.
 - 책임공제는 가입의 강제성에 따라 임의 책임공제와 강제 책임공제로 구분됨.
 - 의무공제 : 법률 계약에 의하지 않고 국가의 법에 의하여 직접 보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공제 및 보험 (예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1과 대물 배상)
 - 임의공제 : 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공제 및 보험(예, 자동차보험 중에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과 대물 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으로 대인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이 있음)
 - 또한, 보상책임을 지는 객체에 따라 신체손해배상 책임공제 및 재산손해배상 책임공제로 구분됨.

■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책임 의무보험 30개 중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은 전무

- 2020년 6월 현재, 국내에서는 재난 안전과 관련한 의무보험 3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소관하는 정부 부처도 14개에 달함.
 - 재난 안전과 관련한 주요 의무 책임보험은 관광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야영장업 배상책임보험, 운전학원 종합보험 등이 있음.
 - 또한, 부처별로 소관하고 있는 재난·안전 의무보험은 문화체육관광부 4개, 경찰청 1개, 해양수산업 4개, 보건복지부 3개, 교육부 1개, 산업통상자원부 1개, 여성가족부 1개, 행정안전부 4개, 해양경찰청 2개, 환경부 2개, 금융위원회 1개, 소방청 1개, 국토교통부 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 등임(<표 1> 참조).

2) 이하 “공제”로 기술.

<표 1> 주요 재난 안전의무 책임보험 현황

관광사업자 배상책임보험 / 야영장업 배상책임보험 / 운전학원 종합보험 / 생활체육자 배상책임보험 / 선주 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 / 학원 배상책임보험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 수련시설 배상책임
 보험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 연안체험활동운영자 배상책임보험 /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 산후조리원 배상책
 임보험 / 수렵보험 / 화재보험신체 손해배상책임특약(특수건물) / 다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보험 /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
 험 / 뉴시터 및 뉴시어션 배상책임보험 / 수상레저보험 /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마리
 나업자 배상책임보험 / 재난 배상책임보험 / 항공보험(경량항공기) / 항공보험(항공사업자) / 궤도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
 우주 손해배상책임보험 /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보험 / 환경오염배상

- 그러나, 30여 개의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책임보험 중 건설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을 목적으로 한 의무보험은 찾아볼 수 없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항공보험(경량항공기 및 항공사업자), 궤도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등의 재난·안전 책임보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재난으로부터 피해자의 구제를 돕는 건설공사 안전과 관련된 의무보험은 없음.
- 다만, 정부 발주공사의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공사공제·조립공제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등이 별도 법령³⁾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을 뿐임.

■ 건설공사 재해 안전 공제의 의무화 확대, 국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논의돼야

-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복지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필수 전제임.
- 건설공사 재해 안전 공제의 의무화 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함. 건설공사는 특성상 재난 발생 후에 피해의 복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초래되는 만큼, 재난 발생 후 조치보다 이를 예방하는 선제적 조치가 더욱 중요함.
- 건설공사와 관련된 재난 발생시 국민과 건설관계자들이 재해 안전 공제로 인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았을 때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건설인과 건설기업의 만족도는 제고될 것임.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조 5호.

건설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

- 사회·환경 문제를 기회로 전환할 기업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필요 -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과 공유가치 창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다양함.
 - 1970년대 프리드먼의 개념은 이윤 증대와 주주 이익 보장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기업이 사회 혹은 이해관계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는 이후 신자본주의적 관점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위치함.
 - 1990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 요소로 인정한 캐롤은 ① 이윤 극대화라는 경제적 책임, ② 법·규제 준수의 법적 책임, ③ 기업 활동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④ 자선의 책임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분했음.
 -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혹은 환경적 관심에 순응하거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의 대응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공유가치 창출은 사회와 환경을 기업활동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외부 요인일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을 정의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인식하는 전략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있음.
 - 수동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혹은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함의한다면, 공유가치 창출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개념을 제안한 Porter & Kramer는 공유가치 창출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언급함.
 - ① 상품과 시장의 재정의(redefinition) : 사회적 문제를 시장의 수요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출하고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는 관점을 내포함.
 - ② 가치사슬의 혁신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 자원 사용, 운송, 조달, 유통 등의 기업 가치사슬 활동에서의 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함과 동시에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함. 그럼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만드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③ 지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 : 특정 지역 내 기업과 연구소, 관련 지원기관 등의 지리적 집적을 통

해 효율적인 산업 운영기반을 조성하면,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이 제거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고용이나 소득 증대 등 사회적 가치 또한 창출할 수 있음.

● 효성TNC-플리츠마마-제주도 지방정부의 공유가치 창출 사례

- 제주개발공사가 제주도에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해,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섬유 리젠을 개발한 효성TNC에 전달하면 효성TNC는 이를 이용해 리젠제주를 만들. 그리고 친환경 가방 제조 스타트업인 플리츠마마가 이 섬유를 이용해 의류와 가방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함.
-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섬유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해, 폐기되는 페트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자체와 상기 섬유를 이용할 수 있는 가방 및 의류 제조업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어으로써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사례임.

■ 건설업에 대한 시사점

● 건설업은 수익의 사회 환원 또는 재능 기부 등 수동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는 적극적이거나 공유가치 창출 전략은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 해비타트 운동에 동참하거나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건설기업들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또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 기업의 고유한 활동과는 구별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대건설이 2014년 처음으로 공유가치 창출 개념을 포함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했으나, 기대했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건설기업이 사회 또는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해 이를 해결할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공유가치 창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역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함.

- 사회 불안정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이 건설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임.
- 재정 부족으로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는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활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 중앙정부가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자금 지원용 펀드 조성 혹은 보조금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설업 일자리

- 일하는 방식, 일자리의 요구 역량 등 변화, 건설산업의 준비 필요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 국가로 경제폐쇄 조치 없이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으나, 10월 들어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프랑스(10·30), 독일(11·2), 영국(11·5) 등이 2차 봉쇄를 준비하고 있음.
- 올해 3월,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은 단기간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증가를 가져왔으며,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비대면·온라인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 삶 전반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변화를 야기함.

■ 코로나19 이후의 일자리 변화

- 코로나19의 발발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는 실업률 증가, 고용 양극화 등 일자리의 질과 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폐쇄조치와 외출자제 조치 등으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하며 유례없는 고용위기 상황이 전개됨.
 - 다만,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현장 폐쇄, 인력 및 자재, 장비의 수급 어려움 등에 따라 고용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9월 현재 건설업의 취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남.⁴⁾
 - 전염병 위기에 대한 모범적인 국가 대응으로 현재 국내 건설산업은 다른 국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영위하고 있으며, 코로나에 따른 직접적인 위기보다는 앞으로의 경기 침체가 가져올 활력 저하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임.
- 또한, 감염병의 확산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삶의 원칙으로 적용되며, 재택근무와 온라인 회의를 통한 업무가 일상화됨.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회의, 원격 교육 등을 경험하며 새로운 업무 방식에

4) 통계청(2020. 10. 16), “2020년 9월 고용동향”.

대한 장벽이 낮아졌고, 앞으로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

-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재택근무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8.4%가 사무직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라고 답했고, 응답 기업의 53.2%는 코로나19 위기 해소에도 재택근무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였음.⁵⁾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사업장 폐쇄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자동화가 고려됨에 따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역량도 변화하고 있음.

- 제조업에서는 전염병에 따른 생산 중지 리스크 확대로 자동화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같은 이 유에서 건설산업은 현장 밖에서 제작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현장 밖 건설의 필요성이 커짐.
- 일자리의 자동화는 필연적으로 기술과 차별되는 인간 고유의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짐.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창의적 인재 또는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가 강조되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변화에 대한 민첩한 적응력과 디지털화 역량 또한 강조되고 있음.

■ 일자리 변화 속, 건설산업의 기회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건설산업에서 시작되고 있던 디지털화와 기술혁신, 이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위기로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모듈화 및 공장제작 등의 생산방식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2020년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률 전망은 3.1%에서 0.5%로 하향 조정되었음. 하지만, 맥킨지, 액센츄어 등 컨설팅 기관들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건설산업이 디지털화를 준비하는 기회로 보고 있음.

● 또한,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재택근무와 온라인 회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원격 작업 등이 수행되며 건설산업의 일하는 방식도 큰 변화를 겪고 있음.

- 코로나 사태 이후 BIM을 사용한 디지털 협업, 4D와 5D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프로젝트 관리, 앱을 통한 보건·안전관리와 자재 주문, 자원관리 등 건설산업의 업무가 디지털화되고 원격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⁶⁾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의 변화는 코로나19의 안정화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님. 일자리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회를 찾기 위한 건설산업의 대응이 시작되어야 함.

성유경(부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5) 9월 7, 8일 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지난해 기준) 중에서 공기업 9곳을 제외한 민간기업 91곳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임.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2020. 9. 11.),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 결과 발표”.

6) McKinsey(2020. 5. 8), 「How construction can emerge stronger after coronavirus」.

경기 회복을 위해선 SOC 투자가 필요하다

올해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차에 걸친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 글로벌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목적하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의 ‘2+1개 축’으로 추진된다. 총 160조원(총사업비 기준)을 투자해 190.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은 중간재적 성격을 지닌 정보통신 인프라 공급의 효율성 문제, 체계적 스마트 인프라 투자 전략 부재, 제한적인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8월 초의 집중호우 및 연이은 마이삭, 하이선 등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인해 제방 및 교량 붕괴, 침수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명 및 시설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급증과 더불어 음압격리병상 부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내경제는 여전히 내수경기가 위축을 보이는 가운데 고용 관련 지표인 취업자 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SOC 투자는 이미 많은 국내외 연구들에서 그 효과성이 증명된 바 있다. 특히, 유희 생산능력과 완화적 통화정책하에서 재정투자의 효과가 크며, 재정투자 중 SOC 투자가 여타의 교육, 보건 및 의료 등의 분야보다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 또한, SOC 투자는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투자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 미국 대통령 직속 경제정책자문기구는 2016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SOC 투

자가 생산성 향상 및 실업률 저하 등에 효과적이라고 대통령에게 분석·보고한 바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 방식을 기존 긴급구호 중심에서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4차례의 긴급재정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도로, 교량, 대중교통, 학교, 주택, 5G 등의 인프라 투자가 주를 이루는 법안이 7월 초 하원 의회를 통과하였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해 감세, 보조금 지급 등 각종 경기부양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정 적자율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 예산을 전년 대비 중앙정부는 224억 위안, 지방정부는 특별채 1조 6,000억 위안을 증액하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겨울철에 들어서고 있으며, 최근 풍수해까지 발생하여 경기 위축 우려와 더불어 재난대응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기 대응은 긴급구호에 집중하고 있다. 2021년 SOC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한 26.0조원으로 표면적으로 금액이 늘었으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2015년 실질가격 기준으로 바꿔보면 2021년 예산은 24.7조원 수준으로 과거 신종플루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과거 이 시기에 정부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연간 26조~27.4조원의 SOC 예산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응했다. 이제는 재난대응 인프라를 중심으로 SOC 투자로의 전환을 통해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 2020.10.21>